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(2043)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행정자치위원회 문영민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, 11분의 동료의원들께서 찬성해 주신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- 먼저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「항공법」이 폐지되고 「공항시설법」이 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근거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하는 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,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